

제정 2011. 7. 1. 제2011-01호
개정 2013. 1. 1. 제2013-02호
개정 2014. 1. 1. 제2014-03호
개정 2015. 1. 1. 제2015-04호
개정 2016. 1. 1. 제2016-05호
개정 2017. 1. 1. 제2017-06호
개정 2018. 1. 1. 제2018-07호
개정 2018. 8. 1. 제2018-08호

개정 2019. 1. 1. 제2019-09호
개정 2019. 7. 1. 제2019-10호
개정 2020. 1. 1. 제2020-11호
개정 2021. 1. 1. 제2021-12호
개정 2022. 1. 1. 제2022-13호
개정 2023. 1. 1. 제2023-14호
개정 2024. 1. 1. 제2024-15호
개정 2025. 1. 1. 제2025-17호
개정 2026. 1. 1. 제2026-18호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장 운 영

제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정원은 09인(명)으로 한다.(특례입소 1명 추가입소 가능)
-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및 관할 지자체의 연계, 인터넷 홍보, 관계지인 소개, 후원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2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 계약목적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시설급여 (1일) <개정, 2011. 7. 1, 2013. 10. 1, 2014. 7. 1, 2017. 1. 1, 2018. 1. 1, 2019. 1. 11, 2020. 1. 1, 2021. 1. 1,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5. 1, 2025. 1. 1, 2026. 1. 1>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 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4,590	69,210	63,800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				
	식재료비(1식)			1일 10,230원(1식 3,410원X3식) X 30일 - 월 306,900원(정액제) <개정 2024. 5. 1, 수정 2026. 1. 1>				
	간식비(1회)			후원금 대체				
	이/미용료등			자원봉사자 활용 대체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개정, 2018. 8. 1>

구 분	시설급여
일반수급자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2. 1. 1.>	0%
40% 감경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12%
60% 감경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25% 이하)	8%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장 제40조(본인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조 [이용료 및 기타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상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의 변경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안전심사절차에 의거하여 안전통과시 결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비급여(식사재료비 등) 변동되어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기타 운영상 이용료 및 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제6조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 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입소비용(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 및 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 1.>

제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다.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침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 1.>
 -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 및 개인 사정에 따라 동행하지 못할 경우 직원이 동행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4. 1. 1.>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부 칙 < 제2011-01호, 2011. 7. 1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13-02호, 2013.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14-03호, 2014.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15-04호, 2015.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16-05호, 2016.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17-06호, 2017.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18-07호, 2018.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18-08호, 2018. 8.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19-09호, 2019.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19-10호, 2019. 7.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20-11호, 2020.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21-12호, 2021.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22-13호, 2022.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23-14호, 2023.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24-15호, 2024.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24-16호, 2024. 5.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25-17호, 2025.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2026-18호, 2026. 1. 1 >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